

# 예 산 총 칙

2012년도 추경 제3회

제 1 조 201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 (단위:천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  | 일시차입한도액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               | 1,348,658,204 | 40,459,746 |
| 일반회계               | 915,077,648   | 27,452,329 |
| 특별회계               | 433,580,556   | 13,007,417 |
| 공기업특별회계            | 161,353,613   | 4,840,608  |
| 상수도사업              | 83,491,237    | 2,504,737  |
| 하수도사업              | 77,862,376    | 2,335,871  |
| 기타특별회계             | 272,226,943   | 8,166,808  |
| 공유재산관리             | 45,997,845    | 1,379,935  |
| 의료급여기금             | 4,408,024     | 132,241    |
|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기금운영 | 1,914,147     | 57,424     |
|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 | 799,157       | 23,975     |
| 도시재정비촉진            | 11,832,779    | 354,983    |
| 도시개발               | 23,352,609    | 700,578    |
| 기반시설               | 1,601,784     | 48,054     |
| 교통사업               | 37,985,630    | 1,139,569  |
| 도시철도건설사업           | 144,334,968   | 4,330,049  |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'세입·세출예산 사업명세서' 와 같다.  
단,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.

제 3 조 2012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'채무부담행위조서' 와 같다.

제 4 조 2012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'계속비사업조서' 와 같다.

제 5 조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'명시이월사업조서' 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016,447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2012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55,300,000천원으로 한다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